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기능연속성계획 수립대상이 헌법기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·단체 및 민간업체까지 확대되는 내용으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이 개정(법률 제18684호, 2022. 1. 4. 일부개정, 2022.4.5. 시행)됨에 따라 기능연속성계획 계획수립의 절차의 대상에 추가된 기관·단체 및 민간업체를 포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

3. 주요내용

가.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 등(안 제29조의3)

- 1)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지침을 통보하는 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고시한 기관·단체·민간업체를 포함(안 제29조의3 제1항)
- 2) 기능연속성계획 변경 시 행안부 장관이 고시한 기관·단체·민간업체가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(안 제29조의3 제4항)
- 3) 행안부 장관의 이행실태 점검 및 시정·보완 요청 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고시한 기관·단체·민간업체를 추가(안 제29조의3 제6항, 제7항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3제1항 중 “장에게”를 “장 및 법 제25조의2 제6항에 따라 고시한 기관·단체(민간단체 포함) 및 민간업체의 장(이하 이 조에서 “기능연속성계획 수립 기관의 장”이라 한다)에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“재난관리책임기관”을 “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법 제25조의2 제6항에 따라 고시한 기관·단체 및 민간업체”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“재난관리책임기관”을 각각 “기능연속성계획 수립 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법 제25조의2제6항”을 “법 제25조의2제7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재난관리책임기관”을 “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법 제25조의2 제6항에 따라 고시한 기관·단체 및 민간업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“재난관리책임기관”을 “기능연속성계획 수립 기관”으로, “있고,”를 “있고,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경우에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9조의3(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재난상황에서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(이하 “기능연속성계획”이라 한다)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	제29조의3(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장 및 법 제25조의2 제6항에 따라 고시한 기관·단체(민간단체 포함) 및 민간업체의 장(이하 이 조에서 “기능연속성계획 수립 기관의 장”이라 한다)에게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기능연속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③ ----- -----.
1. <u>재난관리책임기관의 핵심기능의 선정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</u>	1. <u>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법 제25조의2 제6항에 따라 고시한 기관·단체 및 민간업체</u> ----- --
2. ~ 5. (생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
6. 그 밖에 <u>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</u>	6. ----- <u>기능연속성계획 수립 기관</u> -----

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
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수립 또는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도지사를 거쳐 통보하고,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를 거쳐 통보한다.

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기능연속성계획의 이행실태를 확인·점검(이하 이 조에서 “이행실태점검”이라 한다)하는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미리 이행실태점검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⑥ 행정안전부장관은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이행실태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

④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기관

⑤ ----- 법 제25조의2제7항

⑥ -----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법 제25조의2 제6항에 따라 고시한 기관·단체 및 민간업체

합동으로, 시·군·구에 대하여 이행실태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시·도지사와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.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이행실태 점검 결과 시정 또는 보완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<u>재난관리책임기관</u>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청할 수 <u>있고</u>,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청한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법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. ⑧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. ⑦ ----- ----- ----- <u>기</u> <u>능연속성계획 수립 기관</u>----- ----- <u>있고</u>, <u>재난관리책임기관의 경우에는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⑧ (현행과 같음)
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	
연 락 처	(044) 205 - 4124